

구성원참여·소통을위한규정

4-2-24

규정번호 4-2-24
제정일자 2018.2.5
최근개정 2026.7.20
개정차수 3차 개정
관리부서 기획평가팀

[전면개정 2026.7.20.]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우리대학 구성원의 자율적인 참여를 통하여 민주적인 절차와 구성원간의 합의·소통을 통해 지속 가능한 발전을 추구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규정에서 구성원 참여·소통이라함은 우리대학의 구성원 전체가 학교 운영과 의사결정에 참여하고, 그 의견이 실제 개선사항으로 이어지도록 만드는 체계적인 구조를 의미한다.

제3조(구성원 정의) 이 규정에서 구성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학생(재학생)
2. 교직원(교원, 직원, 조교)
3. 외부 이해관계자(졸업생, 학부모, 산업체, 지역사회 관계자 등)

제4조(위원회의 구성) ① 구성원 참여·소통 활성화를 위하여 구성원참여·소통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③ 교목실장, 기획실장, 교무처장, 학생지원처장, 사무처장, 교수대표, 직원대표, 총학생회장을 당연직으로 하며, 위원장은 기획실장으로 한다.

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, 연임할 수 있다.

⑤ 본 위원회의 업무는 기획평가팀에서 주관한다.

제5조(위원회의 기능)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구성원 참여·소통 추진 실적 및 환류에 관한 사항 검토
2. 소통협력을 통한 주요 의견수렴 및 개선사항 사례 검토
3. 구성원 참여·소통 운영계획 및 추진실적에 대한 심의·의결
4. 기타 구성원 참여·소통에 관한 사항

제6조(운영계획의 수립) 기획실장은 구성원 참여·소통을 위한 연도별 계획을 전년도 추진실적을 토대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하여야 한다.

제7조(절차) ① 주관부서는 차년도 구성원 참여·소통 추진계획(이하 ‘추진계획’이라 한다.) 수립을 위해 각 부서에 자료(실적, 개선사례 등) 제출을 통지하고, 각 부서는 주관부서에 자료를 제출한다.

② 주관부서는 제출된 자료를 토대로 추진계획을 수립하고, 각 부서의 자료와 함께 위원회에

명지전문대학 규정 / 4-2-24 구성원참여·소통을위한규정

제출한다.

③ 위원회는 차년도 추진계획을 심의하여 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한다.

④ 주관부서는 심의 결과에 따른 추진계획을 구성원에게 공유한다.

제8조(기타)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.

부 칙[전면개정]

이 규정은 2026년 7월 20일부터 시행한다.